

2022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선발예정인원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 추후(2022년 3월 경) 공고 예정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65점 (Level 2)	625점
				340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	35점	350점	37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43점 (Level 2)	375점
				204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2022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2021년 12월 말 공고 예정) 공고문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별도 공고문에 안내한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①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사전등록 하였거나 ②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 일정, 등록방법,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고 “2022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2021년 12월 말 공고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점수 등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기간{2022. 2. 28.(월) 09:00 ~ 3. 4.(금) 18:00} 내에 반드시 그 점수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추가등록기간 동안 성적을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성적추가등록신청’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 > 나의 시험관리 > 응시원서접수내역 > 성적수정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 기간 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성적을 등록일정에 따라 사전등록하였고, 사전등록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어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성적을 선택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법원행정처에서 요

구 시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성적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성적이 발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점수(등급)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기간{2022. 2. 28.(월) 09:00 ~ 3. 4.(금) 18:00} 내에 반드시 그 점수(등급)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등록하여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동안 성적을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성적추가등록신청'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 > 나의 시험관리 > 응시원서접수내역 > 성적수정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 기간 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법원행정처에서 요구 시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 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추가등록 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40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접수기간 : 1. 11. ~ 1. 21. (취소마감일 : 1. 24.)	제1차 시험	2. 4.(금)	3. 5.(토)	3. 25.(금)
		제2차 시험	3. 25.(금)	4. 29.(금) ~ 4. 30.(토)	5. 31.(화)
		인성검사	5. 31.(화)	6. 2.(목)	
		제3차(면접) 시험	5. 31.(화)	6. 9.(목)	6. 15.(수)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접수기간 : 3. 21. ~ 3. 25. (취소마감일 : 3. 28.)	제1.2차 시험	6. 3.(금)	6. 25.(토)	7. 15.(금)
		인성검사	7. 15.(금)	7. 20.(수)	
		제3차(면접) 시험	7. 15.(금)	8. 3.(수)	8. 9.(화)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 . 합격자 발표 .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만 공고 . 게시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장애유형별(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별도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 시험의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영어능력검정시험란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의 추가등록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재사항에 한하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4)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 (<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0.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우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가산 특전(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호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취업보호대상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각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

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의사상자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가산비율(%)		5.0	3.0

-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구 분	내 용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산비율(%)	5.0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사본,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험의 일부 면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전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나.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공고합니다.
- 바.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02-3480-1769, 1286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